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정

의안 번호	584
----------	-----

제출년월일 : 2000. 8.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과 사업경비규모의 확대등 제정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등 현행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업으로 선정함(안제2조제1항).
- 나.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4조).
- 다. 투자심사 결과를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함(제6조2항).
- 라.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재실시함(안제7조).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가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2. 차관 또는 지방채기체의 재원이 포함되는 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2.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파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수익성 및 효율성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속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30까지, 하반기는 9월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실·과·소장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심사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순위표
3. 특별회계 가용재원 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기획실장은 투자심사를 위원회에 심의요구 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획실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제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제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

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등 의존재원 사업 신청
4. 기타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 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투자사업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실 ☎ 940-4061
입안자	기획실장	이춘기
	예산담당	유종호
	담당자	이성원